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918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4-18호(2014.2.2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4-91호(2014.9.4.)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6-21호(2016.3.10.)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8-43호(2018.6.14.)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년 9월 20일 ~ 2018년 10월 10일(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02-820-9946), 사당2동주민센터(☎02-820-2590)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523-3571)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관계서류

라.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마.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523-3571)

바. 사업시행(변경) 계획의 요지

-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 3) 구역면적 : 20,667.7㎡
- 4) 사업시행자 :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

5)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서 참조)

- 아파트 7개동(지하2층/지상15층), 3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 주요변경 내용(관계도서 참조)

-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면적(전용·공용)변경, 건물 바닥기초 변경, 지하 주차장 평면 및 면적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변경 및 벽체 변경, 공동이용시설 평면 및 면적 변경, 빗물저수조 용량 변경, 단지 내 조경면적 변경, 107동 서측으로 20cm이동, 단지 내 도로 지하철 경계에서 이격 등

가) 건축계획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수 및 층수	7개동 (지하2층,지상11층~15층)	7개동 (지하2층,지상11층~15층)	
세대수	366세대	366세대	
건폐율	27.20%	27.15%	
용적률	234.08%	234.07%	
연면적	55,351.9053㎡	55,637.0034㎡	
건축면적	4,426.9355㎡	4,418.1020㎡	
주차대수	434대	434대	

사.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아.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었으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이내에 관계 서류에 내용에 대하여 동작구청 주택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주택과, ☎02-820-1381) 또는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17,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부서)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9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2018.7.30. 시행) 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추가 (제2조1항, 제8조2항)
- 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극행정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제2조의2 신설)
- 다.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수정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 라. 별표 1 일부개정 내용
 -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시 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란 중 ‘강등-감봉’을 ‘강등-정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4층)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 - 1221, FAX : 820 - 9998, E-mail : rudwls05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늪우치는 정도”를 “늪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공적상 및 창안상”을 “공적에 대한 표창”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희롱 ⁸⁾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u>뇌우치는 정도</u>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 <u>뇌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삭 제>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

1. (현행과 같음)

2. -----
(공적에 대한 표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신 설>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6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u>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u>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상회용 8)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근무성적, 수
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u>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u>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상회용 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